

동물병원의 의료용(인체용) 마약류약품 취급 가능

요 약

수의사도 동물진료를 위해 동물용과 인의용 구별 없이 모든 마약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완료(2009.9.8일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 회신)

■ 배경

-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를 위해서는 마약류약품(마약, 향정신성의약품)의 사용이 필요하며,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에 의거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되며, 동물병원은 의료기관과 동일한 체계로 마약류사용에 대하여 관리
- 수의사법 제16조(기구등의 우선공급)에 의해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·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나, 동물용으로 식약청에 허가된 마약류약품은 단 5종 뿐이며, 경영이익상 동물용 마약류약품의 생산을 고려하는 제조업체가 없어 약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

■ 문제점

-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수의사의 의료용마약류약품 사용을 금지
 - * 마약류약품의 외부 유출 등 관리상의 사유로 난색을 표명

■ 개선조치

- 우리회에서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
 - *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도 협조 요청
-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에서 2008.2.29일 “인체용 마약류약품을 동물진료 목적으로 수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”고 유권해석하였으나(서울대 수의대에 회신), 일부 보건소 및 마약류약품도매상 등에서 따르지 않고 상위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을 요구
 - * 식약청에서도 유권해석을 번복하여 유보입장을 표명
- 이에 우리회에서 5차례의 방문협의 등을 통해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권해석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정받고, 2009.9.8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수의사도 동물진료를 위해 동물용과 인의용 구별없이 모든 마약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회신받음

■ 각 시·도수협회의 추가 조치사항

- 원활한 마약류약품 공급을 위한 조치결과 홍보
 - 각 시·군·구청 및 보건소 마약담당부서, 마약류약품도매상 등에 수의사가 모든 마약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적극 홍보를 통해 공급 문제 해소
- 마약류약품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- 수의사연수교육시 마약류취급자 교육 강화(시·도청 협조하에 연 2회 실시)
 - 동물병원 마약류약품 사용·관리요령 적극 홍보(우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 224번글 참조)
 - 마약류약품 필히 허가된 마약류도매상에서만 구입하여야 함을 안내

■ 진행 경과

- 2005년 5월 : 임상회원들로부터 마약류약품의 공급 곤란으로 인해 진료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민원 접수
- 2005년 5월 : 동물병원에서 사용이 필요한 마약류약품 수요조사 실시(각 시도지부 및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등)
- 2005년 6월 :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2회 방문협의(담당사무관 및 과장 면담) 및 건의서 제출
- 2005년 7월 :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로부터 관리어려움 등의 사유로 건의 수용 불가 회신
- 2005년 7월 :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문협의 :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외국 사례 조사 요구

- 2005년 7월 : 세계수의사회, 미국수의사회, 영국수의사회, 일본수의사회, FDA 등을 통해 외국 사례 조사
- 2005년 7월 : 대한뉴팜에서 생산되는 인체용마약류약품을 동물용(디아제팜, 페노바비탈)으로 생산해줄 것을 요청
- 2005년 11월 :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동물용 디아제팜 및 페노바비탈 품목허가 진행 관련 협조 요청
- 2005년 11월 :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외국사례를 포함한 2차 건의서 제출
- 2005년 11월 :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(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)
- 2006년 1월 : 동물병원 마약류사용관리 안내자료 작성 배포
- 2006년 2월 :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시행 : 전국 동물병원 대상 마약류감시 실시(2006년도부터 실시)
- 2008년 2월 :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에서 의료용(인체용)마약류도 수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으나, 일선 보건소 등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거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
- 2008년 9월 :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조요청하였으나,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권해석 유보 입장을 사유로 난색 표명
- 2008년 10월 : 우리회의 요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, 식품의약품안전청, 우리회 관계자 회의
- 2009년 4월 :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2회 방문협의
- 2009년 7월 :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방문협의 : 재차 건의를 통해 의료용(인체용)마약류약품도 수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약속
- 2009년 8월 :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방문협의 : 식약청의 입장 확정을 되었음을 안내하고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건의서 제출
- 2009년 9월 :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로부터 의료용(인체용)마약류약품이 수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회신 